

도시·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

※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			처리기간 6개월	
토지소유자	①성명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	②생년월일(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)		
	③주소 우 (전화번호:)					
토지에 관한 사항	④위치		⑤면적(㎡)		⑥지번	
도시·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	구분	⑦시설명	⑧편입면적(㎡)		⑨결정시기	⑩실시계획인가일
	현황					
	확인내용(※)					
토지에 있는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	⑪종류(용도)	⑫구조		⑬연면적(㎡)	⑭층수	⑮사용연수
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	⑯권리종류	지상권·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				
		⑰설정기간	⑱잔존기간	⑲담보(한도)	⑳지대(연액:원)	㉑특기사항
비고	매수청구대상은 지목이 대(垡)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로 한정하며, 이주대책비,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및 잔여지 보상 등은 청구대상이 아닙니다.					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매수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(토지소유자와의 관계: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귀하
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<작성 방법>

1. 접수(※)란에는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.
2. ⑦시설명란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적되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구분에 따른 시설명을 적어야 합니다.
예) 도로·공원·학교 등
3. ⑧·⑨·⑩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.
4. ⑪~⑮란에는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번호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.
5. ⑯~㉑란에는 「민법」에 따른 권리관계를 번호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.

처리 절차

